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증권투자신탁[주식]

- 변경 사항 :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 ② 제10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 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9. 27.

□ 변경 내용

| 항 목 | 정정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| | | |
|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| 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|

요약정보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-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국내 배당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| 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국내 배당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


| | | | |
|----------|---|--|--|
| | | 다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투자비용 |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2024. 9. 2. 기준 2024. 7. 31. 기준 |
| 운용전문인력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2024. 8. 31. 기준 |
| 투자자 유의사항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주요투자 위험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|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|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2024. 8. 31.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
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<u>2024. 8. 31. 기준</u>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|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|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|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| <u>표준편차 : 15.53%</u> | 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32.14%</u> |

|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| | <p>〈신 설〉</p> <p>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</p> <p>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표준편차</u></p> | <p>- 위험등급 변경 내역 : <u>2024.9.27 :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“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”에서 “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” 기준으로 변경</u></p> <p>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</p> <p>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</p>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|---|---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</p> | <p>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 | <p>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〈신 설〉</p> | <p>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〉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98 1146 1433 143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중도 환매 불가</th> <th colspan="2">중도환매 허용</th> </tr> <tr> <th>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</th> <th>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</td> <td>-</td> <td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중도 환매 불가 | 중도환매 허용 | |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|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| - | - | ○ |
| 중도 환매 불가 | 중도환매 허용 | | | | | | | | | | |
| |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|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| | | | | | | | | |
| - | - | ○ | | | | | | | | | |
|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</p> | <p>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</p> | <p>-</p> <p>-</p> | <p>2024. 9. 2. 기준</p> <p>2024. 7. 31. 기준</p> | | | | | | | | |
|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 | 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 |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만원</u>(공적연금소득 제외)</p> | <p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만원</u>(공적연금소득 제외)</p> | | | | | | | | |

| | | | |
|--|--|--|--|
| | | 1,200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 | 1,500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4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 |
|--|--|--|--|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1. 재무정보 |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2024. 9. 2. 기준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|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2024. 9. 2. 기준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2024. 9. 2. 기준 |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 | - <신 설> | 2024. 8. 31. 기준 2022.11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제 25 기(2022.12.31) 제 24 기(2021.12.31) | 제 26 기(2023.12.31) 제 25 기(2022.12.31)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2024. 8. 31. 기준 |